|  |  |  |
| --- | --- | --- |
|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신기술•신응용 안전평가 관리규정**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2017년 10월 30일  제1조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신기술•신응용 안전평가 업무를 규범적으로 전개하고 국가안전 및 공공이익을 수호하며 공민•법인과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 안보법>,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과 성•자치구•직할시 인터넷정보판공실이 조직 및 전개하는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신기술•신응용 안전평가는 이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 규정에서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신기술•신응용(이하 "신기술•신응용"으로 약칭)이라 함은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혁신적 응용(기능 및 응용형식 포함) 및 관련 보조기술을 지칭한다.  이 규정에서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신기술•신응용 안전평가(이하 "신기술•신응용 안전평가"로 약칭)라 함은 신기술•신응용의 뉴스•여론 속성 및 사회동원 능력과 이로써 발생하는 정보 내용의 안전 리스크에 근거하여 평가등급을 확정하고 그 정보안전관리제도와 기술보장조치를 심사 및 평가하는 활동을 지칭한다.  제3조 신기술•신응용을 조정•증설하는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정보안전관리제도와 안전 통제가 가능한 기술보장조치를 수립 및 완비하여야 하며 법률•법규에 의해 금지된 정보 내용을 발표하거나 전파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전국의 신기술•신응용 안전평가 업무를 책임진다. 성•자치구•직할시 인터넷정보판공실은 각자의 직책에 의거하여 해당 행정구역 내의 신기술•신응용 안전평가 업무를 책임진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및 성•자치구•직할시 인터넷정보판공실은 신기술•신응용 안전평가의 구체적인 업무를 제3자 기구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신기술•신응용 안전평가 관련 업계조직 및 전문기구가 자율성을 강화하고 안전평가 서비스 품질 평의 및 신용•능력 공시제도를 수립 및 완비함으로써 업계의 규범화 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을 격려한다.  제6조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신기술•신응용 안전평가 관리제도와 보장제도를 수립 및 완비하여야 하고 이 규정의 요구에 따라 자발적으로 안전평가를 조직 및 전개하여야 하며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및 성•자치구•직할시 인터넷정보판공실이 안전평가를 조직 및 전개하는데 필요한 협조를 제공하고 지체없이 시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자발적으로 신기술•신응용 안전평가를 조직 및 전개하고 안전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1) 신기술을 응용하거나 뉴스•여론 속성 또는 사회동원 능력이 있는 응용기능을 조정•증설하는 경우;  (2) 신기술•신응용기능의 도입으로 이용자 규모, 기능 속성, 기술 실현방식, 기초자원 배치 등이 변경되면서 뉴스•여론 속성 또는 사회동원 능력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신기술•신응용 안전평가 목록을 적시에 발표하여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제공자가 자발적으로 안전평가를 조직 및 전개하는데 참고하도록 한다.  제8조 이 규정 제7조에 따라 자발적으로 신기술•신응용 안전평가를 조직 및 전개하는 과정에서 안전 리스크가 발견된 경우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지체없이 시정 조치를 취하여 안전 관련 리스크를 제거하여야 한다.  이 규정 제7조에 따라 자발적으로 신기술•신응용 안전평가를 조직 및 전개하는 경우 신기술을 응용하거나 응용기능을 조정•증설하기 전에 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9조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이 규정 제8조에 따라 자발적으로 신기술•신응용 안전평가를 조직 및 전개한 후 안전평가 완료일로부터 10일(근무일 기준) 내에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또는 성•자치구•직할시 인터넷정보판공실에 안전평가 조직 및 전개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또는 성•자치구•직할시 인터넷정보판공실에 신기술•신응용 안전평가 조직 및 전개를 신청하는 주체가 중앙 언론사 또는 중앙 뉴스선전부서 주관하에 있는 업체인 경우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안전평가를 조직 및 전개한다. 신청 주체가 지방 언론사 또는 지방 뉴스선전부서가 주관하는 업체인 경우 성•자치구•직할시 인터넷정보판공실이 안전평가를 조직 및 전개한다. 신청 주체가 기타 업체인 경우 소재지 성•자치구•직할시 인터넷정보판공실이 안전평가를 조직 및 전개한 후 평가자료와 의견을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에 보고하여 심사를 받은 후 안전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  제11조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또는 성•자치구•직할시 인터넷정보판공실에 신기술•신응용 안전평가 조직 및 전개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의 진실성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1) 서비스 방안(서비스 항목, 서비스 방식, 업무 형태, 서비스 범위 등 포함);  (2) 제품(서비스)의 주요 기능과 주요 업무절차, 시스템 구성(주요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시스템의 종류, 브랜드, 버전, 설치 위치 등 개요적 설명);  (3) 제품(서비스)에 맞춘 정보안전관리제도 및 기술보장조치;  (4) 자발적으로 조직 및 전개하여 완성된 안전평가보고서;  (5) 안전평가를 전개하는데 필요한 기타 필수자료.  제12조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또는 성•자치구•직할시 인터넷정보판공실은 서류가 완비된 날로부터 45일(근무일 기준) 내에 신기술•신응용 안전평가를 조직 및 완료하여야 한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또는 성•자치구•직할시 인터넷정보판공실은 서면확인, 현장검사, 온라인 모니터링 등 방식으로 제출서류 내용 확인 작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또는 성•자치구•직할시 인터넷정보판공실은 안전평가를 완료한 후 스스로 또는 제3자 기구에게 위탁하여 안전평가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13조 신기술•신응용 안전평가보고서에 기재된 의견 중에 신기술•신응용에 정보안전 리스크가 존재한다거나 필요한 안전보장 조치•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을 지적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지체없이 시정 조치를 취하여 법률•법규•규장 등 관련 규정과 국가 강제성 표준의 관련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가 시정을 거부하거나 시정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여전히 법률•법규•규장 등 관련 규정과 국가 강제성 표준의 관련 요구에 부합되지 아니함으로써 허가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또는 성•자치구•직할시 인터넷정보판공실은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관리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서비스 제공자에게 기한부 시정을 명한다.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허가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뉴스정보 업데이트를 일시 중지시킨다.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허가증>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허가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허가증 갱신을 불허한다.  제14조 신기술•신응용 안전평가를 조직 및 전개하는 관련 업체와 인원은 직책 이행 과정에서 알게된 국가기밀, 상업비밀 및 개인정보의 비밀성을 엄격히 유지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누설•매각하거나 불법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또는 성•자치구•직할시 인터넷정보판공실은 주동감시관리제도를 수립하여 신기술•신응용에 대한 감시와 순찰을 강화하고 정보안전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며 기업이 주체책임을 이행하도록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제16조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제공자가 이 규정에 따라 안전평가를 진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관리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 인터넷정보판공실이 처벌을 내린다.  제17조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허가 신청 단계에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또는 성•자치구•직할시 인터넷정보판공실에 신기술•신응용 안전평가 조직 및 전개를 신청하는 경우 이 규정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제18조 이 규정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互联网新闻信息服务新技术新应用**  **安全评估管理规定**  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2017年10月30日  　　第一条 为规范开展互联网新闻信息服务新技术新应用安全评估工作,维护国家安全和公共利益,保护公民、法人和其他组织的合法权益,根据《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互联网新闻信息服务管理规定》,制定本规定。  　　第二条 国家和省、自治区、直辖市互联网信息办公室组织开展互联网新闻信息服务新技术新应用安全评估,适用本规定。  　　本规定所称互联网新闻信息服务新技术新应用(以下简称“新技术新应用”),是指用于提供互联网新闻信息服务的创新性应用(包括功能及应用形式)及相关支撑技术。  　　本规定所称互联网新闻信息服务新技术新应用安全评估(以下简称“新技术新应用安全评估”),是指根据新技术新应用的新闻舆论属性、社会动员能力及由此产生的信息内容安全风险确定评估等级,审查评价其信息安全管理制度和技术保障措施的活动。  　　第三条 互联网新闻信息服务提供者调整增设新技术新应用,应当建立健全信息安全管理制度和安全可控的技术保障措施,不得发布、传播法律法规禁止的信息内容。  　　第四条 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负责全国新技术新应用安全评估工作。省、自治区、直辖市互联网信息办公室依据职责负责本行政区域内新技术新应用安全评估工作。  　　国家和省、自治区、直辖市互联网信息办公室可以委托第三方机构承担新技术新应用安全评估的具体实施工作。  第五条 鼓励支持新技术新应用安全评估相关行业组织和专业机构加强自律,建立健全安全评估服务质量评议和信用、能力公示制度,促进行业规范发展。  　　第六条 互联网新闻信息服务提供者应当建立健全新技术新应用安全评估管理制度和保障制度,按照本规定要求自行组织开展安全评估,为国家和省、自治区、直辖市互联网信息办公室组织开展安全评估提供必要的配合,并及时完成整改。  　　第七条 有下列情形之一的,互联网新闻信息服务提供者应当自行组织开展新技术新应用安全评估,编制书面安全评估报告,并对评估结果负责:  　　(一) 应用新技术、调整增设具有新闻舆论属性或社会动员能力的应用功能的;  　　(二) 新技术、新应用功能在用户规模、功能属性、技术实现方式、基础资源配置等方面的改变导致新闻舆论属性或社会动员能力发生重大变化的。  　　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适时发布新技术新应用安全评估目录,供互联网新闻信息服务提供者自行组织开展安全评估参考。  　　第八条 互联网新闻信息服务提供者按照本规定第七条自行组织开展新技术新应用安全评估,发现存在安全风险的,应当及时整改,直至消除相关安全风险。  　　按照本规定第七条规定自行组织开展安全评估的,应当在应用新技术、调整增设应用功能前完成评估。  　　第九条 互联网新闻信息服务提供者按照本规定第八条自行组织开展新技术新应用安全评估后,应当自安全评估完成之日起10个工作日内报请国家或者省、自治区、直辖市互联网信息办公室组织开展安全评估。  　　第十条 报请国家或者省、自治区、直辖市互联网信息办公室组织开展新技术新应用安全评估,报请主体为中央新闻单位或者中央新闻宣传部门主管的单位的,由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组织开展安全评估;报请主体为地方新闻单位或者地方新闻宣传部门主管的单位的,由省、自治区、直辖市互联网信息办公室组织开展安全评估;报请主体为其他单位的,经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互联网信息办公室组织开展安全评估后,将评估材料及意见报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审核后形成安全评估报告。  　　第十一条 互联网新闻信息服务提供者报请国家或者省、自治区、直辖市互联网信息办公室组织开展新技术新应用安全评估,应当提供下列材料,并对提供材料的真实性负责:  　　(一) 服务方案(包括服务项目、服务方式、业务形式、服务范围等);  　　(二) 产品(服务)的主要功能和主要业务流程,系统组成(主要软硬件系统的种类、品牌、版本、部署位置等概要介绍);  　　(三) 产品(服务)配套的信息安全管理制度和技术保障措施;  　　(四) 自行组织开展并完成的安全评估报告;  　　(五) 其他开展安全评估所需的必要材料。  　　第十二条 国家和省、自治区、直辖市互联网信息办公室应当自材料齐备之日起45个工作日内组织完成新技术新应用安全评估。  　　国家和省、自治区、直辖市互联网信息办公室可以采取书面确认、实地核查、网络监测等方式对报请材料进行进一步核实,服务提供者应予配合。  　　国家和省、自治区、直辖市互联网信息办公室组织完成安全评估后,应自行或委托第三方机构编制形成安全评估报告。  　　第十三条 新技术新应用安全评估报告载明的意见认为新技术新应用存在信息安全风险隐患,未能配套必要的安全保障措施手段的,互联网新闻信息服务提供者应当及时进行整改,直至符合法律法规规章等相关规定和国家强制性标准相关要求。在整改完成前,拟调整增设的新技术新应用不得用于提供互联网新闻信息服务。  　　服务提供者拒绝整改,或整改后未达法律法规规章等相关规定和国家强制性标准相关要求,而导致不再符合许可条件的,由国家和省、自治区、直辖市互联网信息办公室依据《互联网新闻信息服务管理规定》第二十三条的规定,责令服务提供者限期改正;逾期仍不符合许可条件的,暂停新闻信息更新;《互联网新闻信息服务许可证》有效期届满仍不符合许可条件的,不予换发许可证。  　　第十四条 组织开展新技术新应用安全评估的相关单位和人员应当对在履行职责中知悉的国家秘密、商业秘密和个人信息严格保密,不得泄露、出售或者非法向他人提供。  　　第十五条 国家和省、自治区、直辖市互联网信息办公室应当建立主动监测管理制度,对新技术新应用加强监测巡查,强化信息安全风险管理,督导企业主体责任落实。  　　第十六条 互联网新闻信息服务提供者未按照本规定进行安全评估,违反《互联网新闻信息服务管理规定》的,由国家和地方互联网信息办公室依法予以处罚。  　　第十七条 申请提供互联网新闻信息服务,报请国家或者省、自治区、直辖市互联网信息办公室组织开展新技术新应用安全评估的,参照适用本规定。  　　第十八条 本规定自2017年12月1日起施行。 |